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15일, 임미애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23.) 상정, 축조심사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1.2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0.)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4.) 상정, 축조심

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 4. 23.)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임미애의원)

현재 농업·농촌은 농가소득 정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농가 소득원의 발굴과 에너지 전환의 조화로운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에서 농업을 지속하면서 그 상부 공간 등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예외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이 어려워 사업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범위에는 농지를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에 이용하는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프랑스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에서는 농지 상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뿐만 아니라 농업용 온실, 그늘막, 창고 등 농업 관련 시설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도 영농 지속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프랑스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영농형 태양광 범위를 규정하는 등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념과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인 구축과 보급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음(소위 직회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윤준병)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기타사항

없음